

달라진 광주법원, 5·18 위자료 잇따라 증액 판결

광주고법·지법, 최근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액 상향 판결 이어져 사망자 최대 2억 기준은 여전...아직은 일부 재판부 변화에 그쳐 법원 따라 최대 4배 차이 지적 속 “서울법원 수준으로 더 올려야”

광주법원에서 최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망자 기준 위자료 최대 2억원으로 서울 법원 인정액(최대 4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법원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부 재판부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재판부별 편차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17일 선고한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민사 항소심 10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들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심각한 구타를 당하거나 보안대·상무대 등으로 끌려가 불법 구금·가혹 행위를 당한 5·18 피해 당사자 또는 유족들이다.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위자료 산정 금액이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인용금액(피해 위자료)을 최

대 4배까지 상향했다.

5·18 당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고 장해등급 14 등급을 인정 받은 부상자는 1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4배인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

17살의 나이로 상무대로 연행돼 157일 구금 과정에서 구타를 당해 장해 10등급을 받은 원고에 대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70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1억1000만원으로 올렸다.

340일간 구금돼 석방후 정신분열,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장해 5등급을 받은 원고는 1심 8000만원에서 1억86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이 항소심 재판부는 장해에 따른 최대 위자료 기준을 2억원(사망시)까지 올려 책정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광주지법 일부 민사재판부에서도 서울지법 수준의 위자료 상향 산정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민사14단독(판사 최윤중)은 5·18당시 구금 구타를 당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을 인용했다.

16살의 나이에 민주화운동에 나선 A씨는 1980년 5월 19일 시위도중 계엄군에게 곤봉 등으로 폭행당하고 연행돼 34일간 구금됐다. A씨 변호인 측은 서울지법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광주법원의 위자료가 모든 민사재판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올해 새로 구성된 민사1부가 자체 논의를 거쳐 기존 위자료 인정액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별로 다르고 아직 다른 민사재판부에서는 상향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법원의 경우 아직 사망자 위자료 최대치를 2억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상자 위자료 산정 액수가 사망자 위자료 최대치 범위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서울법원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최대 4억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위자료 산정 최대 액수는 2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17일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법원은 타지역에 비해 5·18 관련 사건 위자료 인정액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지역 법조계에서도 일률적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고법) 판단을 참고해(위자료 인정 액수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해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광주법원의 5·18 관련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최근 일부 재판부가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판결이 나오며 따라 변화가 기대되지만,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유공자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비뚤어진 역사의식 발간한 책에 '5·18은 반동이자 반역' 폄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5·18민주화운동을 '반동이자 반역'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은덕(전북 전주갑) 의원은 지난 18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같은 지적을 내놨다.

문제의 도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지난 7월 발간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다. 이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배포되고 있다.

도서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문구가 실렸다.

'이승만과 4·19, 박정희와 1968-1974년간은 민주사회 기반 구축기의 고통으로 재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에 반역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인 사회문화 체계의 독특성을 보지 않고 내 자

유를 제약받으면 무조건 독재로 규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데모크레이지다', '1945년대 이후 모두를 서양의 민주·독재의 프레임 한 줄 자로 재는 것은 합리적·이성적 정당성이 없다'는 등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는 글도 기술돼 있다.

도서에 수록된 지도 대부분에서 독도가 빠져있는 점, 한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에 일본이 '변압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실린 점 등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고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 도서 집필은 김진현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이 했으며, 김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대중적 역사 교육물을 제작하는 기관이 5·18을 왜곡해 기술한 것이 오히려 반동이고 반역이 아니냐"며 "책 내용을 수정하고 배포된 책을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마켓 니어디어’ 북적 지역 상인들이 나서서 지역민들에게 건강한 소비문화를 제안하는 ‘2024 마켓 니어디어’가 2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야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위험한 갯바위 낚시...파도 휩쓸려 60대 사망

여수서 바다에 빠진 40대 구조도

여수에서 갯바위 낚시에 나선 낚시객들이 잇따라 바다에 빠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8시 20분께 여수시 돌산읍 방죽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60대 여성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일행과 함께 갯바위에서 낚시 중이었으며 바위를 덮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경의 협조 요청을 받은 민

간 어선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사고 해역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앞서 같은날 오전 8시 50분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목넘어 갯바위에서도 4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갯바위 낚시 중이었던 B씨는 너울성 파도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 인근 해상 암벽 갯바위를 잡고 있던 중 해경에 의해 15분만에 구조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암 투병 노점상 찢려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 법원, 살인미수죄만 인정...징역 10년 선고

노점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정신질환자가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영광군 영광읍 터미널시장 인근에서 노점상 B(6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B씨 유족은 “암투병 중인 B씨가 흉기에 찢린 탓에 함양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일명 ‘김밥-콜라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김밥-콜라 사건은 1993년 전북 전주에서 조폭

조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찢려 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가 숨진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음식과 수분 섭취 역제를 해야하는 상황을 모르고 병원에서 김밥과 콜라를 먹고 숨졌다. 당시 대법원은 ‘김밥-콜라를 먹어 증상이 악화해 숨졌지만, 흉기 피습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에 찢려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감정 결과, 의사가 자상이 간암을 악화시켰는지 등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A씨의 범행이 B씨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지만, 살인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